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8959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1. A

피고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8. 5. 17.

판결 선고2018. 6. 7.

주 문

1. 피고 B, C, D 및 선정자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692,063원 및 이 중 11,879,985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C, D 및 선정자 F과 연대하여 위 제1항 기재 돈 중
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 선정자 H은 28,338,412원 및 이 중 2,375,997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I, J은 각 18,892,275원 및 이 중 각 1,583,998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은 18,892,275원 및 이 중 1,583,998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선정자 K은 16,392,809원 및 이 중 8,026,180원에 대하여 1992. 8. 25.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 A이,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 D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G은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새한종합금융'이라 한다)로부터 물건(방전기계 1대)을 리스받음에 있어 그 리스료에 관한 지급보증으로 원고(변경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 새한종합금융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새한종합금융, 보험가입금액 46,000,000원, 리스보증기간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6년간으로 정한 리스보증보험약정(증권번호 L)(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인 G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G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 이내 일반대출 최고금리에 의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그 이율의 변동시에는 변경 당일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1)).

나. 피고 B, C, D, 선정자 F, K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시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G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G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새한종합금융은 1990. 7. 18.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1990. 8. 6. 새한종합금융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G과 피고 B, C, D, 선정자 F, K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7가단172241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다.

마. 원고는 위 구상금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G과 피고 B, C, D, 선정자 F, K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5436)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8. 3. 13. G과 피고 B, C, D, 선정자 F은 연대하여 51,368,087원과 그 중 32,965,180원에 대하여 1992. 8. 29.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K은 G, 피고 B, C, D, 선정자 F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6,392,809원과 그 중 8,026,180원에 대하여 1992. 8. 25.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G은 2009. 4. 3. 사망하였고, G의 배우자인 선정자 H, 자녀 선정자 F, I, K, J,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E이 재산상속인으로서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다.

사. G과 피고 B, C, D, 선정자 F은 2016. 2. 19.까지 원금으로 34,120,015원을 변제하였고, 보증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2016. 2.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29,812,078원이다.

아. 선정자 H, I, K, J, 피고(선정당사자) A은 특별상속한정승인(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17년 단10223)을 신고하였고 법원은 2018. 1. 29. 이들의 한정승인을 수리하였다. 이 특별한정승인 심판은 이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사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D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 C, D, 선정자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 선정자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원금 11,879,985원(지급한 보증보험금 46,000,000원 - 변제받은 원금 34,120,015원)에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2016. 2.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29,812,078원을 합한 141,692,063원 및 이 중 11,879,985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연대보증을 한 이후 15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연대책임을 물어 승소판결을 얻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대보증을 한 때로부터 장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권자가 연대보증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선정자 K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K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서 피고 B, C, D, 선정자 F과 연대하여 16,392,809원 및 이 중 8,026,180원에 대하여 1992. 8. 25.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정자 K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어 이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선정자 K에 대한 청구는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선정자 K의 한정승인여부는 선정자 K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선정자 K을 제외한 G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 선정자 F 등 연대보증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692,063원 및 이 중 11,879,985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G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선정자 H은 15분의 3, 선정자 I, J과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E은 각 15분의 2 비율로 법정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 D, 선정자 F 등 연대보증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정자 H은 28,338,412원($141,692,063원 \times 3/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 중 2,375,997원($11,879,985원 \times 3/15$)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I, J, 피고 E은 각 18,892,275원($141,692,063원 \times 2/15$) 및 이 중 1,583,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H, I, J과 피고(선정당사자) A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풍

별지

1) 현재의 연체이율은 연 15%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채무자 G 등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1995. 10. 22.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이 이보다 더 높고 원고가 연 15%의 근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기재하지 아니한다.